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9

발의연월일: 2024. 8. 27.

찬 성 자:이철규·송언석·김선교

서일준 • 박준태 • 조정훈

박충권 • 유상범 • 강승규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 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 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 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 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
	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
	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재산
	<u>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u>
	<u>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
	에 계상하여야 한다.
	<u>1. 국가</u>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u>관</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